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

1.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2. 동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처나 지자체는 우리 처(식품표시광고정책과)에 2022.5.23.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,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.

3. 아울러, 동 개정(안)은 관보('22.5.12.)와 우리 처 홈페이지(http://www.mfds.go.kr > 법령/자료 > 입법/행정예고)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2. 검토의견서(양식)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수신자 관계부처, 지자체 및 관련 협회

주무관 조효정 사무관 이지영 식품표시광고정전결 2022. 5. 12. 책과장 박동희
협조자
시행 식품표시광고정책과-6624 (2022. 5. 12.) 접수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/ www.mfds.go.kr
전화번호 043-719-2183 팩스번호 043-719-2180 / chipchipstar00@korea.kr / 대국민 공개